

부산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1가단34568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강경철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8. 10.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2. 1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나. 피고는 B에게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6. 접수 제90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 기업의 경영정상화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차전4072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있고, 2021. 11. 19.을 기준으로 B에 대한 채권은 원금 13,753,922원과 지연손해금 57,410,234원 합계 71,164,156원이다(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B의 부(父) C의 소유였는데, C은 2005. 10. 10. 사망하였다.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는 처 D, 자녀들인 E, F, 피고, B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B의 법정상속지분은 2/11이다.

라. 망인이 사망하고 11년이 넘게 지난 시점인 2017. 2. 15. 망인의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7. 2. 1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6. 접수 제9064호로 '2005.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법정상속지분인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외에는 별다른 적극적 재산이 없는 반면,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창원시 성산구청에 대한 과세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분할협의 시점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위 기초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7. 2. 16. '2005. 10.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분할협의는 등기원인으로 기재된 날인 2005. 10. 10.이 아니라 실제로는 2017. 2. 15.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피고도 2021. 12. 18.자 답변서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2017. 2. 15.에 있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2017. 2. 15.로부터 5년 이내인 2021. 11. 24.에 제기되었으므로 적법하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부터 원고의 B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을 상속한 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2. 16. 접수 제906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의 병원비를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고, 어머니 D에 대한 병원비 부담 등 부양의무도 자신이 혼자 책임지고 있으며,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이유로 2017. 2. 15.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받기로 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해 피고가 그동안 D의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A의 소유 지분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된 근거가 될 수 없고, 피고의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별지

1. 부산광역시 연제구 G 대 71.8㎡

2. 부산광역시 연제구 G

[도로명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H

위 지상

조표 I

블록조 스테이지봉단층주택

31.05㎡, 끝.

